

2024 세법학 I 추록

2024년 4월 11일 발행
정정문 지음 / 상경사 출간

- 이 추록이 필요한 책 : 『세법학 I』(정정문) 제25판
- 주요 내용 : • 출간 후 발견된 몇 가지 오류수정
• 출간 후 개정된 법령 반영

I. 오류수정사항

1. 세법학 I - ①

P	행	종전의 내용	고침
375	上 18	2024.3.#,	2024.3.22.

2. 세법학 I - ②

P	행	종전의 내용	고침
13	上 16~18	(3) ① 소각당시 시가가 ... <u>주식가액(무상주 의제배당)</u>	(삭제) ^(*주)
	上 19	(4) 법인이 ...	(3) 법인이 ...
123	上 3	'업무추진비(接待費)'란 ...	'업무추진비(業務推進費)'란 ...
502	下 5	<u>2024년</u>	<u>2025년</u>

(*주) 삭제하는 이유 : ①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거나 ② 소각일부터 2년 이내에 자본금에 전입하는 경우 그 자기주식소각이익의 자본금 전입으로 인하여 주주가 받은 주식가액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잉여금을 재원으로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한다. 따라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배제금액에 해당하는 것이 법이론에 부합한 데 2024.2.29.에 개정된 「법인세법 시행령」에서는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배제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삭제한 것입니다. 추후에 입법적 보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.

II. 개정법령 등으로 인한 수정사항

1. 세법학 I - ①

(1) 2023년 귀속연도부터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 따른 초과배당금액 소득세율 조정

🔍 p.655 上 14행. 아래 내용으로 교체

* 초과배당금액 5,760만원 이하분×14% ...

🔍 p.655 上 18~26행. 아래 내용으로 교체

(*주2) '소득세율(14%~45%)'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(상증칙 10의3 ①).

초과배당금액		소득세율
	5,760만원 이하	초과배당금액 × 14%
5,760만원 초과	8,800만원 이하	806만원 + (초과배당금액 - 5,760만원) × 24%
8,800만원 초과	1억5,000만원 이하	1,536만원 + (초과배당금액 - 8,800만원) × 35%
1억5,000만원 초과	3억원 이하	3,706만원 + (초과배당금액 - 1억5,000만원) × 38%
3억원 초과	5억원 이하	9,406만원 + (초과배당금액 - 3억원) × 40%
5억원 초과	10억원 이하	1억7,406만원 + (초과배당금액 - 5억원) × 42%
10억원 초과		3억8,406만원 + (초과배당금액 - 10억원) × 45%

2. 세법학 I - ②

(1) 비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액 소득처분 보완

종전	개정
<input type="checkbox"/> 비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액 소득처분 <input type="checkbox"/> 기부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① 주주·출자자(출자임원은 제외) : 배당 ② 임원·직원 : 상여 ③ 그 외의 자 : 기타사외유출	<input type="checkbox"/> 소득처분 보완 <input type="checkbox"/> 기부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] (종전과 같음) ③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: 기타사외유출 ④ 그 외의 자 : 기타소득

<개정이유> 비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액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사외유출 소득처분과 동일하게 귀속자가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, 그 외의 자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도록 보완하였다.

<적용시기> 이 규정은 2024년 3월 15일 이후부터 적용한다.

🔍 p.120 上 13~14행. 아래 내용으로 교체

** 비지정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은 그 기부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① 주주·출자자(출자임원은 제외)는 배당, ② 임원·직원은 상여, ③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은 기타사외유출, ④ 그 외의 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(법기통 67-106-6).

(2)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」 개정에 따른 수정사항

㉠ p.136 上 15~19행. 아래 내용으로 교체

⑥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(제24조 ②,④)」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.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에서는 ‘사용자로부터 급여를 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노동조합의 업무를 할 수 있다.’고 규정하고 있는데, 이 규정을 위반하여 법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한다.

(3)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」 개정에 따른 수정사항

㉡ p.666 下 6~1행. 아래 내용으로 교체

㉠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(제24조 ②,④)」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. 이는 같은 법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자*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를 말한다. 종전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면서 각종 공제혜택을 받았으나, 위법소득인 점을 고려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(각종 혜택배제).

* 여기서 ‘근로시간 면제자’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근로자를 말한다. 이러한 근로시간 면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노동조합의 유지·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(제24조 ①,②,④)).

㉢ p.684 上 17행. 아래 내용으로 교체

③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」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

㉣ p.686 上 13행. 아래 내용으로 교체

【물음 1】 A회사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이노조씨에게

㉤ p.687 上 5~8행. 아래 내용으로 교체

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에서는 근로시간 면제자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노동조합의 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, 이 규정을 위반하여 법인이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위법비용이므로 업무무관비용의 하나로 손금불산입한다.

🕒 p.687 上 15~16행. 아래 내용으로 교체

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지급받은 급여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.

🕒 p.688 上 4~5행. 아래 내용으로 교체

대해서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. 따라서 이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하되,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납부 분리과세한다.